

「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0. 12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11.. 26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종합민원과과장)

- 법률 제11062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이 2011.09.16.제정되어 2012.03.17.부터 시행됨에 따라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“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”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(안 제2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(안 제3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(안 제4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해촉 (안 제5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 (안 제6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(안 제7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간사 (안 제8조)
-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지적재조사 특별법」이 2012. 3. 16일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관련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판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, 학계, 공무원 등 전문가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
 -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자 「지적재조사 특별법」에 따라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